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45252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4. D

5. E

6. F

7. G

변론 종결2014. 6. 12.

판결 선고2014. 6. 26.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19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3.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9. 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F 사이에 2013. 1.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은 피고 C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3. 1. 18. 접수 제4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E와 피고 G 사이에 201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는 피고 E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3. 2. 26. 접수 제18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195,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3.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9. 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장 기재 199,686,910원은 199,195,75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제2, 3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2. 2. 24. 원고와의 사이에, 위 피고가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와 체결한 현대제철 3기 소결 주설비 COOLER ASS'Y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현대로템, 보험가입금액 2억 9,300만 원, 보험기간 2012. 2. 23.부터 2013. 8. 31.까지로 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피고 A은 2012. 10. 31. 원고와의 사이에, 위 피고가 현대로템과 체결한 하이스코 당진 2냉연 공장 HBS SYSTEM STACKER CRANE 제작(14대)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현대로템, 보험가입금액 4억 9,500만 원, 보험기간 2013. 3. 21.부터 2014. 3. 20.까지로 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3) 피고 A은 2012. 12. 20. 원고와의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지이씨(이하 '지이씨'라 한다)와 체결한 OSX(브) 조선소 PANEL LINE 도급제작 7식(공사번호 : H)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지이씨, 보험가입금액 2억 8,050만 원, 보험기간 2012. 12. 10.부터 2013. 5. 15.까지로 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4) 피고 A은 2012. 12. 20.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지이씨, 보험가입금액 8억 4,150만 원, 보험기간 2012. 12. 20.부터 2013. 4. 15.까지로 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5)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 1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 E은 이 사건 제1, 2, 3, 4보험계약, 피고 D은 이 사건 제2, 3, 4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6)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본인이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약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피고 A, 현대로템의 보험금 지급 청구 등

- 1) 피고 A은 2013. 2. 27.경 지이씨와의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반납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정산 협의를 하였다.
- 2) 한편, 피고 A은 2013. 4. 30.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었는데, 지이씨는 같은 날 피고 A에게 '피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2013. 2. 28.자로 OSX(브) 조선소

PANEL LINE 도급제작 7식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3) 이후 지이씨는 2013.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5,500만 원(계약금) 및 8억 4,150만 원(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현대로템은 2013.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9,300만 원(계약이행보증 보험금) 및 7억 2,000만 원(하자이행보증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4) 원고는 2013. 6. 10. 지이씨에게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억 5,500만 원(계약금)과 475,903,032원(선급금에서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 등 합계 730,903,032원을 지급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3. 6. 10.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에 관하여 55,804,250원을 회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4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에 관하여 167,425,450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 C, E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C은 2013. 1. 16. 피고 F과의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18.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3. 1. 18. 접수 제4553호로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E은 2013. 2. 20. 피고 G와의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3. 2. 26. 접수 제18761호로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기타

1) 피고 C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동생이다.

2) 피고 C, E은 이 사건 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 E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부도처리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위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따라 지이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2억 5,500만 원에서 원고가 회수한 55,804,25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 199,19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3. 7. 10.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9. 8.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9%(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은 2013. 8. 21.이나 원고가 2013. 9. 8.까지 연 9%를 구하므로 이에 따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원고는 2013. 9. 9.부터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이 이미 그 전에 도달하였으므로, 2013. 9.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3. 1. 16. 및 2013. 2. 20. 이미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보험계약약정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서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피고 A가 2013. 4. 30. 부도처리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3. 4. 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설령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금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 4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 이상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 피고들은 피고 A와 지이씨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에 따라 지이씨에게 보험금(계약금 및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와 지이씨가 2013. 2. 27.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합의하면서 작성한 회의록 제10항에 '동광에 지급한 계약금(₩765,000,000 VAT 별도)을 별도 대출 또는 차입해야 하므로'라고 적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곧바로 계약금과 선급금의 반환방법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증인 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회의록 제10항 말미에 보면 '금액 정산 후 차액에 대하여 지급시기 및 보증관련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두 회사가 정산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사 정산 집계표(을 제16호증)를 보면 정산합계액의 명칭이 '보험청구금액'으로 적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이씨로서는 피고 A으로부터 대출 등의 방법으로 계약금 등을 회수하기보다는 보증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한 데도 굳이 이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A이 부도처리됨으로써 위 계약보증금을 지이씨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지이씨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4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제4보험계약에 따른 피보전채권의 수액을 다투고 있으므로 보건대, 현재 원고가 이 부분은 청구취지로 삼지 않고 있고, 원물반환으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어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제4보험계약 부분을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툰 바가 있으므로 부가적으로 살펴보면,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이씨는 선금금 841,500,000원에서 정산금액 318,006,665원[= 자재비 동광 청구금액(246,029,245원) + 노무비(64,300,000원) + 공장임대료 초과 정산분(7,677,420원)]을 공제하여 523,493,335원을 계산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75,903,032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위 공제금 318,006,665원은 당시 피고 A과 지이씨 사이의 정산협약에서 인정된 정산금액 303,448,769원(= 자재비 228,212,106원 + 노무비 등 63,000,000원 + 금융이자 7,236,663원 + 운반비 5,000,000원)보다 더 큰 금액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제4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음을 밝혀 두고,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됨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1,

2부동산은 피고 C, E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소유였던 부산 해운대구 K 제102동 제502호 아파트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 보인다),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피고 C, E이 피고 F,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1, 2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F, G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5,200만 원을 피고 A과 피고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1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7(각 통장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 F, G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F은, 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사포일반산업단지 내에서 피고 A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 C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 C에게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에 땅을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피고 C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를 내비쳐 피고 C과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피고 F으로서 피고 C과 피고 A의 재정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인근 부동산 시세와 별 차이가 없었고, 피고 F이 매매대금을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에게 피고 F이 2013. 1. 16. 1,5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3,700만 원을 대출받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F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 F은 피고 C과 같은 사포산업단지 골프동호회 회원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② 이 사건 1매매계약은 2013. 1. 16. 체결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위 계약 당일인 2013.

1. 16. 매매대금 5,200만 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분 없이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같은 날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 F은 중개사무소의 중개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3. 1. 16.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은 자신의 통장에서, 나머지 3,7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 F이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투자가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신속하게 매수하여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뿐만 아니라, 피고 F은 피고 C이 제주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1부동산이 전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에 불과하고, 이미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등으로 향후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지분권자의 변동이 예상되어 그 사용이나 처분이 용이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부동산을 선뜻 매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④ 한편, 이 사건 1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F이 2013. 4. 19. 피고 A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F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1매매계약으로 인한 거래 외에도 별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F이 피고 C, A의 재정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또한, 위 돈에 대해 피고 F은 대여금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돈의 성격이 의심스럽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F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G는, 유학 간 딸인 M이 2014. 2.경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M이 부모가 살고 있는 해운대 부근에 있는 집에서 살기를 원하여 해운대 부근의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2부동산을 소개받고 이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2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3,000만 원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3. 2. 26. 피고 G의 딸이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2부동산을 피고 E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하기로 함으로써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2013. 2. 26. 피고 E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이 모두 지급된 점,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현재 시세와 거의 비슷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 G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2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과 잔금 5,000만 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월세 100만 원을 매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M의 미국 대학 학생증(을 제20호증)의 기재를 보면 유효기간이 2018. 1. 31.로 되어 있어 2014. 2.경에 학업을 모두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현재 2014. 2.이 지났음에도 돌아와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M은 1990년생으로 피고 G의 하나뿐인 딸로서(을 제18, 19호증) 귀국 후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생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8, 9,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G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G의 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1매매계약, 피고 E와 피고 G 사이의 이 사건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F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G는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차경환

판사장민경

판사우상범

별지